

#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6년 2월 16일

나. 회부일자 : 1996년 2월 16일

3. 제안이유

○ 국가유공자, 농어촌개발, 사회교육시설 및 임대주택 지원 등 국가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확대하고, 일부 정책 목적이 달성된 분야는 세제지원을 축소 조정하는 등 감면조례를 정책 목적과 현실에 맞도록 조정코자 하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○ 도세의 면제 범위 확대

-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제 범위에서 상이급수 3급 내지 5급 대상자 중 일부만 제외하던 것을 모두 면제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취득세, 등록세 및 면허세 면제(안 제2조 제3항)
- 농가의 농외소득원 지원확대를 위해 농산물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(안 제18조 제1항 제2호)

-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면적의 초과부분에 관계없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(안제19조제1항)

○ 세제지원을 위한 규정 신설

- 노인복지법 제19조의3에 의거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(안제6조의2)

-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중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의 취득세,등록세 및 공동시설세 면제(안제7조제7호)

- 임대사업자등이 40제곱미터이하의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영구임대주택 안의 복리시설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,등록세 및 공동시설세 면제(안제14조제2항)

○ 견인계약서에 의한 도세 경감율 축소 조정

- 부동산등기 신청시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작성된 견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30%를 경감 하던 것을 20%로 축소(안제20조제1호, 제2호)

## 5. 검토의견

충청북도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이는 현행 지방세 감면 조례 중 도세의 면제범위를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는 부분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감면 규정을 신설코자 함과 아울러 견인계약서에 의한 도세 경감율을 축소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

## 주요내용으로는

-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규정에 있어 상이급수상 3급내지 5급에 적용하던 상이등급의 분류 내용을 삭제하여 면제 대상의 범위를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전 대상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,
-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
-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 및 추징규정 대상에 있어서도 과학관 육성법에 의해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항목을 추가신설하여 확대시행하고자 하였으며
-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던 현행조례를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영구임대주택안의 복리시설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규정을 신설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또한 농외소득원개발을 위한 감면 조항에 있어서는 산지 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자로서 가공품의 생산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자 대해서도 감면대상이 되도록 조례조문의항 내용을 추가로 삽입 개정 코자함과 아울러 ③항의 상위법 적용규정조문인 “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”을 “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”으로 조례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
-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있어서는 현행 조례①항 중의 단서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며

. 검인계약서 사용등에 대한 도세 경감율을 축소 조정하여 조례조문의  
자구수정과 아울러 취득물건의 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 
의 세율을 축소하여 현행 30%에 대해 경감해오던 세율을 20%로 조정코자  
하는 내용으로서

본 개정조례안은 정책적으로 세제 간면이 필요한 부분과 현행조례의 문제  
점 등을 보완 수정 및 신설하여 현실과 부합되는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 
내용으로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## 6. 첨 부

### 충청북도세 간면 조례 중 개정조례(안)